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141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10.04 kkangsangjun@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골든타임 축구교실 -

정보공개서

골든타임 축구교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골든타임 축구교실 인천서창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17 마스타프라자 708,709호

[대표전화번호] 0507-1326-9525 [대표팩스번호] 0504-148-952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010-2349-952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골든타임 축구교실 인천서창점	골든타임 축구교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17 마스타프라자 708,709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01.13	강상준	0507-1326-9525	0504-148-9525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811-97-0145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기재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골든타임 축구교실	
상 호	골든타임 축구교실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여 가맹점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상표출원번호 : 40-2023-0116928 (제41류)
그 밖의 영업표지	강상준의 골든타임	상표출원번호 : 40-2023-0116926 (제41류)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16,640	2,273	14,367	67,087	7,769	7,907
2023	57,068	2,296	54,772	178,471	62,465	62,465

○ 당사는 2022년 1월 13일 개업하였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강상준	대표	2022.01.13~현재	대표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출원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해당 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23.07.02. 출원	상표출원번호 : 40-2023-0116928 (41류)	강상준	출원중
강상준의 골든타임	해당 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23.07.02. 출원	상표출원번호 : 40-2023-0116926 (41류)	강상준	출원중

- 상기 상표와 서비스표는 귀하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입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중에 있으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사업 현황

1.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미실시
(직영점 시작한 날 : 2022년 01월 13일)

2. [골든타임 축구교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골든타임 축구교실	골든타임 축구교실	강상준	가맹사업예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17 마스타프라자 708,709호

3. [골든타임 축구교실]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골든타임 축구교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 관련	축구교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3	2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1	-	1	1	-	1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2	-	-	-	2

6. [골든타임 축구교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2	193,545	2,165	-	-	-	-	1개점 산정
서울	-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미만
경기	1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	해당없음						5곳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	해당없음						5곳미만

○ 당사의 [골든타임 축구교실]은 2023년말 기준 2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1개점(김포마산구래점)은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므로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매출액 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8.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골든타임 축구교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개)	평균 영업기간 (일)
2023	2	183

○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가맹금예치서비스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1588-9999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가맹계약체결일 이후 KB국민은행에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KB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 기업뱅킹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서비스이용 ->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점사업자” 을 통해 가맹금 예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예치 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4,000				
가입비	38,500	계약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	"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 영업이 개시되거나 교육이 시작된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미수금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7,000
가입비	38,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264㎡(80평)기준 금액	3.3㎡당			
총 계		94,380	1,111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정)	70,400	880	해당없음	해당없음	
간판	협력업체(미정)	5,280	66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비/장비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정)	13,200	165	해당없음	해당없음	
초도물품 (축구용품 및 유니폼 등)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정)	5,50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컨셉 제공,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제공, 검수 제공의 비용으로 평당 55만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표의 금액은 80평일 경우를 3.3㎡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간판과 사인물 일체, 기기 및 비품, 의자/탁자, 키오스크, CCTV, 기타공사, 초도물품은 실제 평수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의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는 구장, 사무실, 상담실, 관람석 공간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상기의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비용에는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승압,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소품, 여농, 외부탁트, 외부샷시, 가설칸막이, 자동문, 바닥콘크리트타설, 우드블라인드, 간판 및 사인, 상하수도 인입, 파사드, CCTV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비용이 부담**되며, 야간공사 진행여부, 특수상권 입점 시 특수상권 공사 및 시설 기준, 면적의 증감 및 매장 상황과 인테리어 컨셉의 변화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 장비 비품 등의 필수설비리스트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의 동의 또는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시 확정

○ 가맹점 입지선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체되어 영업활동이 지연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입지,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언을 행할 뿐이며, 이는 해당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 여부 및 높은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가맹점 점포의 설치 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교육 및 필요시 보수교육	성년자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자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 500만원 이하 550천원, 500만원초과~1000만원 이하 110만원 10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 165만원 1500만원초과~2000만원 이하 220만원 2000만원초과~2500만원 이하 275만원 2500만원초과 330만원	익월 15일	월단위 입금으로 반환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 비용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 방침과 각 가맹점 의 영업방식 및 혜택부여 등에 따라 로열티 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고객관리프로그	세계로	월 121천원	익월 15일	월단위	사용된 비용	

램	시스템			입금으로 반환없음		
광고 및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실시 전	실시 이전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적 시행만 해당 / 지역별은 각 가맹점 실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별도 공지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이나 기간 경과 후 반환 안됨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자율	실비부담	-			교체·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	가맹본부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시 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자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 나 기타 점포의 운영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교육서비스의 품질유지와 동일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관리프로그램과 강의일지 및 월간 결과보고서 기록 관리를 강제하고 있으며, 귀하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보고서, 회계관련자료, POS자료 등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구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교육서비스의 품질유지와 동일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관리프로그램 이용, 강의일지와 월간 결과보고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1항과 2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 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와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골든타임 축구교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승계하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당사에 가입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당사의 운영방침 및 가맹사업시스템, 가맹점 운영방식과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가입비와 교육비는 VAT 포함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VAT가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및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원(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귀하가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일십만원(₩100,000-)을 지연손해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종료에 따라 귀하는 당사 전산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며,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철거 및 원상회복 완료 시까지의 가맹점사업자의 지연손해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본 계약 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양도 등도 포함한다) 시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당사에 본 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종료로 인한 반품이 불가능하며, 반품 가능한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의 종료 시 귀하는 가맹점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상실한 후에는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골든타임 축구교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지 참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상품수준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품질 기준에 따라 제공할 것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상품 및 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된 상품과 용역을 취급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교육,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공지	2022년 12월말 기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골든타임축구교실과 동일한 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 업종	[골든타임 축구교실]	해당없음
----------------------------------	---------------	------

○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로드상권일 경우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1. 계약점포가 속하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함 2. 로드상권 내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영업지역 범위는 가맹점 계약점포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와 합의하여 영업지역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영업지역표시도 상 지도의 내용과 표시에 의합니다. 단, 영업지역은 별첨 지도의 경계선을 불 포함한 안쪽 지역입니다.

○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서 귀하의 계약점포가 로드상권 내 위치하고 가맹계약서나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별점의 영업지역에 표시되지 않아도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동의를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골든타임 축구교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개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개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된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당사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가맹희망자가 직영점의 양수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직영점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전환되고 가맹계약서 또는 합의에 의해 새로이 영업지역이 설정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0.2%	59.8%	0%	0%

○ 당사는 오프라인 판매 운영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	34조 2항

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는 고객 불만이 연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현재 또는 개정되는 가맹사업법 등 각종 정부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5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35조 2항

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두렵게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두렵게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 귀하의 사전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2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귀하가 무단으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폐점절차를 진행한 경우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동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귀하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달리 대다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이 동의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공법이나 서비스기법이 달라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나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서 당사의 명성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 당사는 양수희망자가 신용도 등의 문제로 가맹본부인의 명성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나 양수희망자가 영업을 양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양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업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절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희망자는 거절이 통보된 때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거절사유에 대하여 소명 및 검증함으로써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시 가맹점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입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또한 양도 등에 따라 당사가 진행하여야 할 행정적 실비(양도양수 진행 및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와 계약서 작성 등)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귀하는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 준용	교육수로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범위 내의 권리의무	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			

○ 귀하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대한민국 내에서 [골든타임 축구교실]과 동일업종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드럼 악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 업종 및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골든타임 축구교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9시~ 오후 10시	연중무휴	문의: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당사에 휴업 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사업장 업무량에 비례하여 적정 운용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귀하는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사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방문→장비 및 설비의 품질 유지 및 사업장운영확인→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정기 / 필요 시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방문→서비스 실태→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청결(Cleaness)	담당자 매장방문→청결 및 시설 설비기준 확인→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기타 (매장 비치 서류)	담당자 매장방문→매장 비치 서류 확인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골든타임 축구교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단위: %)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20%	광고비 8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Day 이벤트 행사 (전국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 동의시 전체 적용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없음	전액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이 고려하고 있는 할인카드 및 멤버십 제휴서비스,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조언 등을 행할 뿐이며, 실시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함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없음	전액부담		

- 전국단위 광고 및 판촉행사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지역 광고 및 판촉행사일 경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연 등을 행할 뿐이며,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최종 결정에 의합니다.
-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골든타임 측구교실]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공급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만원(₩10,000,000)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오천만원(₩50,000,000)
-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⑨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영업지역 설정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28	
점포실측/설계(필요시)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필요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필요시)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2(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고객관리, 교육법 실습	개별 및 집단 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고객관리, 교육법 실습 등의 보수교육	실습교육	별도 통지	필요시

- 개업교육은 매장 오픈시기를 고려하여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골든타임 축구교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15일 (7시간/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필요 시

- 개업교육은 본사에서 교육 및 현장출장 교육 등이 실시되며, 정해진 교육 일정 외의 추가교육이나 현장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업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 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인천	골든타임 축구교실 인천서창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17 마스타프라자 708,709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1년 1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178,471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 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